증평군 Jeung Pyeong

군 보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14호 2020년 10월 30일(금)

조 례

○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9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

규 칙

○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규칙 -------- 16
○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 ---------- 17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

예 규

○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 23
○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 30

공 고

○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 35

회 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3,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941호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미래기획실, 예산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관”을 “미래기획실장, 예산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942호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2. 읍·면 행정기능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나.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것

2. 자치활동의 진흥,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활동할 것
3. 주민·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것

제4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에 자치회장의 임무는 관할 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장 등 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위원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라.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선정 등) ① 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

개모집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장 또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위원을 선정한다.

⑥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 및 자치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 공개모집을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상 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직권 또는 해당 자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주민자

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의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읍·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회계 및 사업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 외의 사람 중에서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자치회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개별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행정·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해당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과 주민의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주민자치회가 함께 협의체(분과위원회 단위의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별로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2.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3.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 수탁사무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자치회

장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치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주민자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943호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말한다.
2. “마을방송장비”란 마을별로 주민에게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등을 전달·홍보하기 위한 유·무선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및 대피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 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마을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비용(운용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군의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군이 직접 또는 마을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관리자 지정 등) ① 마을방송장비의 운용・관리자는 지원을 받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장은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 본인 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임시로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장비를 운용・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이 직접 또는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장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마을명	※ 행정리 기재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과거 지원 여부		여 □ / 부 □			
지원 대상		설치(신규 및 교체) □ / 수리 □			
신청 이유		※ 파손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 이후 관리자		성명: / 연락처: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944호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온라인 상품권 등) 및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1만원
2. 2만원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법 제17조제2항의 증

표를 제시하는 공무원의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가맹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군(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2.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⑤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⑥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군수는 지역 축제·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 등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 현황의 공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6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홍보
2. 상품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의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90호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91호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무

나. 제4조의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한 사무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2.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의 참여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사무수행의 적정 여부
2. 지원된 예산 집행의 적법·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고, 교부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92호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승인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장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가맹점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역 축제·행사 등 참여 가맹점) ①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라 지역 축제·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역축제등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지정된 가맹점·지정기간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가맹점의 운영기간은 가맹점 등록이 승인된 때부터 지역축제등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등 참여 가맹점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대장

판매기관

구 분		발 행		매 출		잔 고		회 수	
		매 수	금 액(원)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합 계	월 계								
	누 계								
10,000원권	월 계								
	누 계								
20,000원권	월 계								
	누 계								

20 년 월 일

증평군수 귀하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예규 제24호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준비시간 공제) 다목적강당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1시간 이내의 사전준비시간을 사용료 산정 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출납원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료 등 수납한 현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이하 “휴양공원사업소”라 한다) 수입금출납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일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수입금 중 예약취소 반환금,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시설 사용료 확정금액을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평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가가치세의 납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휴양촌 및 캠핑공원 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 확정금액 징수결정 후 즉시 휴양공원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된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출납원이 일괄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

제5조(재료비)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료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대시설·장비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이용)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 중 1박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휴양촌: 다목적 운동장, 탁구대, 원두막 등
2. 휴양림: 다목적 구장, 물놀이장

② 체험 프로그램 이용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회 이용객을 10명 내지 1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한다.

제7조(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의 운영) ① 예비객실은 숙박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정·운영하며, 황토집·별무리하우스의 각 1실로 한다.

② 당일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예비객실은 당일 현장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별 우선사용객실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 예약일 7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군민우선사용객실: 숲속의 집 2동, 황토집 2동, 별무리하우스 4실
2.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 우선 사용객실: 숲속의 집 1동

제8조(이용객의 행위 제한)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야영 및 음주
2. 고성방가
3. 기물 또는 비품 파손
4. 풍등, 폭죽 등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물질 사용
5. 정치 또는 종교 홍보 행위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7. 반려동물 동반 입실(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8.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②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시설 이용중지 또는 퇴소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당직근무는 공무원이 하되, 근무인원 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휴양촌: 일직 1명, 숙직 1명
2. 휴양림: 일직 2명, 숙직 2명

③ 휴양촌 숙박시설 이용객이 없는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예약 등 전화 상담은 휴양림 근무자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른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체험시설 근무일) ① 체험시설(산림레포츠 시설,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근무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5일을 근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일은 체험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의 지정)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18시부터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추석 연휴
3. 시설의 개보수일
4. 산림레포츠 시설, 명상의 집의 경우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휴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좌구산 캠핑공원 이용수칙

좌구산 캠핑공원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 o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입실한 날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 o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시설 이용
   - o 반드시 배정된 시설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o 시설 파손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 o 캠핑공원 안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o 1면당 텐트 크기는 6인용 기준입니다.
4. 차량 이용
   - o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며, 반드시 정해진 차량진행 방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가능한 자동차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 1면당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대입니다. 그 외 차량은 공원입구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 음
   - o 22:00부터 07:00까지는 정숙 시간이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쓰레기 및 폐수 처리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7. 유실 또는 피해
   - o 이용객 소유물의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금지행위
   - 가. 지정장소 외에서 화기 사용은 금지되며, 캠핑공원 전 지역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
   - 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행위
   - 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는 상업적인 홍보 및 물품의 판매
   - 라.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 마. 캠핑장내 세차
   - 바. 반려동물 동반 금지
9. 긴급사태
   - o 호우·강풍 등 재난으로 위급하거나 피난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공원 이용 수칙을 어기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 및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좌구산 숲 명상의 집 체험 재료비

(단위: 원)

시설명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비 고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공예체험	자연물만들기	5,000	
		우드버닝(소)	5,000	
		우드버닝(중)	6,000	
		우드버닝(대)	9,000	
		우드버닝(빵도마)	15,000	
		하바리움	10,000~15,000	
		방향제	13,000	
		나전칠기	10,000	
		스트링아트	10,000	
		스칸디아모스	10,000	
		목공예	10,000	
	천연염색체험	손수건(소)	3,000	
		손수건(중)	5,000	
		손수건(대)	7,000	
		인견 손수건	10,000~15,000	
		인견 스카프	25,000	
	액자만들기체험	소	5,000	
		중	10,000	
		대	15,000	

[별지 서식]

숲속 모험시설 이용 동의서 및 안전수칙

(앞면)

NO. _____ 책임자: _____

※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고객님의 모든 정보는 숲속 모험시설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 이용제한

○ 키즈코스(7세~13세) : 신장 110cm 이상
○ 짚라인(7세 이상) : 신장 110cm 이상, 몸무게 25kg이상 100kg이하
※ 음주자, 임산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자는 이용할 수 없음.

❑ 유아/어린이/13세 이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1. 본인은 아래에 기록된 유아, 어린이 또는 13세 이하 청소년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서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모험시설 놀이 활동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가자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본 이용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참가자 보호자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호하는 모든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2. 본인과 참가자들은 안전지도자의 사전 시설 이용 교육과 이 서약서의 안전규칙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카라비너와 트롤리로 이루어진 하네스 및 안전모등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참가자들이 숲속모험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 본인은 숲속모험시설의 활동 시설이 공중 장애물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참가자들과의 시설 이용 중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가이드없이 활동하는데 동의합니다.

5. 만일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고나 손해는 제외함.

6. 본인은 참가자들이 현재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인증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체험 취소나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이름	나이	세	⑥ 이름	나이	세
② 이름	나이	세	⑦ 이름	나이	세
③ 이름	나이	세	⑧ 이름	나이	세
④ 이름	나이	세	⑨ 이름	나이	세
⑤ 이름	나이	세	⑩ 이름	나이	세

보호자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

체험일자 20 . . .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장

(뒷면)

▣ 안 전 수 칙 ▣

본 활동은 동반 및 단체 활동이 아니며, 독립적인 개인 활동입니다.
공중활동은 위험하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까지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본 활동에 앞서 안전수칙을 모두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안전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활동은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상, 부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 책임이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코스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안전수칙】

❑ 키즈코스

(1) 본 시설은 보호자동반 사항은 의무이며 이용자에 안전사항을 책임진다.
(2) 본 시설은 한명의 이용자가 한 게임 구간을 마치면 다른 이용자가 게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3) 본 시설은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거꾸로 되돌아 올 수 없다.

❑ 짚라인

(1) 트롤리에 카라비너를 모두 완벽히 걸고 안전요원이 지시한 출발자세로 도착지점까지 유지한다.
(2) 이전 이용자가 게임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착 플랫폼(정거장)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용자가 출발 할 수 있다.
(3) 짚라인 하강 시 손을 절대로 트롤리 앞에 두거나 와이어를 잡지 않는다.
(4) 슬리퍼 및 치마착용 금지하며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

【비이용자의 주의사항】

짚라인 활동지역, 플랫폼(정거장)과 게임구간 도착구간 밑에 서 있거나 지나다니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

(1)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현기증, 불편함 및 가벼운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정거장) 등의 일부 구간에서 이용자 스스로 이용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요원의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의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없이 이를 감수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3) 참가조건 거짓신고, 안전수칙 미 준수,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예규 제25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 처리) ①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 모든 수입금은 수입금출납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수입 확정금을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평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등 감면) ① 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사전준비시간을 시설 사용료 산정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단체 이용객의 경우 인솔자 및 운전자의 관람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율리 휴양촌 등 숙박시설 이용자의 관람료 등 감면은 해당 숙박시설의 정원에 한정한다.

제4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내용 등은 계절 및 날씨 등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상설 프로그램: 별표 1에 따라 운영

2. 가족 캠프 프로그램: 가족을 대상으로 천문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일 3일 전까지 16명 이상 이용 예약을 한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운영

3. 청소년 천체캠프 프로그램: 좌구산 휴양림 및 휴양촌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이상 예약을 한 경우에 별표 3에 따라 운영

제5조(관람료 감면 대상자 확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관람료 감면 대상자 여부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제6조(근무일 등) ① 천문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천문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5일을 근무. 다만, 근무자별 구체적인 근무일정은 천문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한다.

2. 휴무일: 조례 제6조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휴관일

3. 근무시간 외의 폐관 시까지 천문대 운영은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여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함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그 밖의 휴일 근무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② 군수는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천문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의 작성・비치) 천문대 근무자는 천문대 예약 대장 등 천문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설프로그램 운영방법

- 대　　상: 청소년, 가족 및 일반인
- 진행방법: 최대 40명단위 가이드 안내
- 체험시간

회수	천체관측	천체투영실	전시실
1	14:00	14:30	자유관람
2	15:00	15:30	
3	16:00	16:30	
	천 문 박 명 시 간		
4	20:00	19:30	자유관람
5	21:00	20:30	

* 하절기 및 동절기에 따라 관람시간 조정

[별표 2]

가족캠프 프로그램 운영방법

- 대　　상: 가족
- 예　　약: 홈페이지 사전예약(3일전까지) 16명 이상 예약한 경우에 진행
- 날　　짜: 금요일, 토요일
- 시　　간: 19:30 ~ 21:30
- 내　　용: 갈릴레오따라잡기, 천체관측, 천체투영실관람

프로그램	내　용	소요예정시간
갈릴레오 따라잡기	천체망원경 강의, 가족별 망원경체험	60분정도
천체투영실 관람	계절별자리 또는 천체동영상 관람	30분정도
천체관측	달, 행성, 별, 성운 성단 등 관측	30분정도

- 일정

　* 하절기 및 동절기에 따라 일정 조정

[별표 3]

청소년 천체캠프 프로그램 운영방법

- 대 상: 좌구산휴양림 및 율리휴양촌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단체 및 초·중·고등학생 20명이상
- 날 짜: 화요일~토요일(1박2일)
- 예 약: 홈페이지 사전예약(30일전까지)
- 내 용: 태양관측, 만들기체험, 천체강의, 갈릴레오따라잡기, 천체투영실 관람, 천체관측, 휴양림체험 등

소요예정시간	프로그램	내 용	비고
1일차			
30분	오리엔테이션	캠프일정과 체험시설 설명	
30분	태양관측	흑점 및 홍염관측	
60분	만들기체험	만들기와 과학실험	
30분	천체강의	오늘의 관측대상 설명	
60분	갈릴레오 따라잡기	천체망원경 강의 모둠별 망원경체험	
30분	천체투영실관람	계절별자리 또는 천체동영상 관람	
60분	천체관측1&2	달, 행성, 별, 성운 성단 등 관측	
2일차			
3시간	휴양림 체험	좌구산휴양림 숲해설 및 생태체험	

- 체험일정

  * 하절기 및 동절기에 따라 일정 조정

증평군 공고 제2020-790호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으로 2021. 1. 1.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기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내용 및 대리 수강 규정(제2조)

- 노래연습장 업소 준수사항,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및 제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 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시간(안 제3조) : 연 3시간

다. 교육통지(안 제4조)

-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함이 원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 문화체육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043-835-4116, 팩스 : 043-835-4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붙임 서식 참조)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20. 11. 20.(금)까지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제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 시간)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5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시작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